

의안번호	제 192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3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2월 28일

#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
----------	-----

발의연월일 : 2023년 2월 28일  
발 의 자 :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 1. 제안이유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일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추가로 규정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2조)
- 나.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 허가 대상 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를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이에 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공작물 등을 말한다.

1. 도서관

2. 어린이집

3. 공원·놀이터·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4. 주민자치센터

5. 공중화장실

6.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7.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8. 주민복지회관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제1조(목적) ----- 「상수원 관리규칙」 제12조-----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li> <li>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li> <li>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li> </ol>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 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농업용 취수시설을 말한다.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도서관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용 취수시설
2. 농업 체험·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이에 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공작물 등을 말한다.

1. 도서관
2. 어린이집
3. 공원·놀이터·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4. 주민자치센터
5. 공중화장실

<신 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7.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8. 주민복지회관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 관계법령

### □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4. 11. 28., 2017. 4. 11., 2020. 11. 24., 2022. 6. 14.>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騒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 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이하 생략>

##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3. 7. 26., 2016. 7. 1., 2019. 12. 20., 2021. 10. 20., 2022. 5. 6.>

1. ~ 2. <생략>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 차. <생략>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 카. <생략>

타.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생략>